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운영에 관한 소위원회회의 의견서

(1999.2.11. 조시현 작성)

지난 1999.1.16. 법률분과의 결정으로 2000년 법정의 명칭, 구성, 성격과 내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김창록, 조시현, 홍성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명칭문제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토의된 바와 같이 2000년 일본군성노예국제전범(또는 인권)법정(International War Crimes(Human Rights) Tribunal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2. 법정의 구성

이 문제는 아래 3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준비작업의 진척에 따라 나중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을 것.

3. 법정의 운영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1) 제3국의 인물로 구성된 판사들 또는 배심원들에게 각국의 피해자대표단체들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고 일본정부에게 피고의 자격으로 법정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방식
- (2) (1)과 같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방식에 덧붙여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
- (3) (1)(2)에 덧붙여 각국의 국내법원에서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개인의 민사책임을 물을 경우 그 가능성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

(1)의 경우 러셀법정처럼 판사이외에 배심원들을 두어 평결(verdict)를 쓰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할 수 있을 것. 다만 배심원들을 둘 경우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양심을 대표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위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의 방식을 따를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 구체적인 형벌권이 없다는 민간법정으로서의 기본적인 한계 말고도 특정된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석재판을 금지하는 국제법원칙에 비추어 법정의 절차 진행은 국제법에 반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의 측면에서 민간법정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국가와 국제사회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진정한 법정을 설치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피고로 하는 방식보다는 증인으로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보

다 현실적일 것 같다.

위와 같은 점에서 (1)의 방식에 따른 법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각국(피해자들의 본국과 제3국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의 국내법원에서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개인의 형사(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소추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은 있는지 등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같이 여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서 진상조사가 종군위안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된 경우 그 성과를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에 관계된 사람들의 연명으로 일본정부와 각국 정부 그리고 국제연합에 보내는 고소장과 호소문을 채택하여 국제전범법정의 운동적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2000년 국제전범법정은 첫째 법정에서 일본의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둘째 개인책임추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라는 중층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덧붙여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제학생모의재판을 병행할 수 있다.